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자치행정과	1

( 2014. 2. 27 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이진표 ]**

## 1. 안 건 명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2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4년 2월 19일

나. 의안번호 : 14-15

## 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제4항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

## 5. 개정이유

가. 서교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

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

다.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## 6. 주요 내용

가. 서교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 (월드컵북로 15 → 동교로15길 7)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」 제1조(목적) 중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으로 개정

## [ 검토결과 ]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교동주민센터가 2013.12.31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“월드컵북로 15”에서 “동교로15길 7”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」 제1조(목적) 중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5항을 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로 근거조항을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 관 계 법 령

## [ 지방자치법 ]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 
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 
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  
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